

2023년도 문화재위원회

**제12차 중능분화재분과 위원회 회의자료**

- ▣ 회의일시 : 2023. 12. 19. (화요일), 14:00 ~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
# 목 차

## 【심의사항】

1	남양주 영빈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2	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(2개동)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
3	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
4	남양주 휘경원 주변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공사
5	양주 은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종묘배양장) 신축
6	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
7	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
8	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태양광 설치
9	(사적)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10	(사적)서울 정릉 및 서울 의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11	(사적)서울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12	(사적)서울 영휘원과 송인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13	종묘 촬영허가신청(tvN 사극 ‘원경’)

## 【보고사항】

1	광화문 월대 관리 기반시설 구축 및 현판 경관 조명 개선 보고
2	조선왕릉동부지구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
3	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

---

# 심 의 사 항

---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2-01

1. 남양주 영빈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 
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「남양주 영빈묘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남양주 영빈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남양주 영빈묘(사적)
  -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
- (3) 신청내용
  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25-16 일대
  - 사업내용
    - 허용기준 1구역(일부)을 2구역으로 조정, 허용기준 2구역(전체)을 3구역으로 조정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## 2.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(2개동)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

### 가. 제안사항

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「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단독주택(2개동) 부지조성 및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단독주택(2개동) 부지조성 및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
  - '21년 사적분과 소위원회('21.4.28.),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1.11.16.), '22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2.1.18.) / 부결 :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  - '23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3.10.17.) / 보류 : 해당 부지에 대한 허용기준 재조정에 관한 주민 건의와 남양주시의 검토절차가 진행 중이고 동절기 경관의 변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완, 확인하여 재심의토록 함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남양주 영빈묘(사적)
  -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
- (3) 신청내용
  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25-36 외 1(문화재구역에서 157m 이격, 1구역)
  - 사업내용 : 단독주택(2개동) 부지조성 및 신축

구분	1차 (‘21.4.28./부결)	2차 (‘21.11.16./부결)	3차 (‘22.1.18./부결)	4차 (‘23.10.17./보류)	금회(안)
대지면적	2,974㎡	1,374㎡	1,374㎡(건축부지) 1,729㎡(도로형질변경) 총 3,103㎡	1,124㎡(건축부지) 1,432㎡(도로형질변경) 총 2,556㎡	좌동
건축 (연)면적	544.80㎡ (961.60㎡)	247.56㎡ (384.84㎡)	273.60㎡ (273.60㎡)	추후 건축 심의	149.5㎡(149.5㎡) 가·나동 : 74.75㎡
건축규모	지상2층, 8동	지상2층, 4동, 경사지붕(H:7m) 목구조	지상1층, 4동, 경사지붕(H:4.15m), 목구조	추후 건축 심의	지상1층, 2동, 경사지붕(H:4.24m), 경량철골구조
부지조성	콘크리트 포장 (1,638.5㎡) 보강토옹벽 L:385.7m (H:0.0~4.9m) 역L형옹벽 195.7m (H:0.0~4.5m) 법면조성(500㎡)	콘크리트 포장 (1,611.5㎡) 보강토옹벽 L:124.3m (H:0.0~3.0m) 역L형옹벽 175.1m (H:0.0~4.9m) 법면조성(131.6㎡)	콘크리트 포장 (1,611.5㎡) 보강토옹벽 L:124.3m (H:0.0~3.0m) 역L형옹벽 L:175.1m (H:0.0~4.9m) 법면조성(131.6㎡) 성/절토량 2,826㎡/1,116㎡	콘크리트 포장 (1382.5㎡) 보강토옹벽 L:82.3m (H:0.0~1.0m) 역L형옹벽 L:131.4m (H:0.0~2.0m) 자연석쌓기 L:92m (H:0.0~2.0m) 법면조성(22㎡) 성/절토량 483.3㎡/72.3㎡	좌동

### 3.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

#### 가. 제안사항

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「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#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 외 1
- (2) 대상문화재명 : 남양주 영빈묘(사적)
  -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
- (3) 신청내용
  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45-13번지 외 1  
(문화재구역에서 465m 이격)
    - 허용기준 1구역(개별심의) 및 4구역(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)
  - 사업내용 : 단독주택 신축공사
    - 대지면적 : 397㎡
    - 건축면적/연면적 : 79.20㎡ / 158.40㎡
    - 건축규모/최고높이 : 1개동, 지상2층, 경량목구조 / 9.3m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## 4. 남양주 휘경원 주변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공사

### 가. 제안사항

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「남양주 휘경원」 주변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남양주 휘경원 주변에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○ ○ ○

(2) 대상문화재명 : 남양주 휘경원(사적)

-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6-3번지

(3) 신청내용

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9-11 외 1필지  
(문화재구역에서 108m 이격)

- 허용기준 2구역(평지붕 5m, 경사지붕 7.5m 이하/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)

○ 사업내용 :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공사

- 대지면적 : 588m<sup>2</sup>

- 건축면적/연면적 : 66.00m<sup>2</sup>/66.00m<sup>2</sup>

- 건축규모/최고높이 : 1개동, 지상1층, 경량철골구조 / 4.7m

(4) 신청인 의견

- 창고시설을 신축하여 농사용 기계 및 농기구를 보관·사용하고자 합니다.

## 5.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종묘배양장) 신축

### 가. 제안사항

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「양주 온릉」 주변 종묘배양장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양주 온릉 주변에 종묘배양장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  - '23년 8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보류 : 현지조사 후 재검토
  - '23년 11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보류 : 설계도면 등 자료 보완 후 재검토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양주 온릉(사적)
  - 소재지 :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-41 (일영리)
- (3) 신청내용
  - 위치 :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4-35번지(문화재구역과 연결)
    - 허용기준 1구역(개별심의)
  - 사업내용 :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종묘배양장) 신축
    - 대지면적 : 990m<sup>2</sup>
    - 건축(연)면적 : 164.7m<sup>2</sup>(164.7m<sup>2</sup>)
    - 건축규모/최고높이 : 1개동, 지상1층, 일반철골구조 / 4.5m
    - 부지조성 : 잡석포장 525m<sup>2</sup>
    - 피해방지웬스(H:1.5m) : 104m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

## 6.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

### 가. 제안사항

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「화성 용릉과 건릉」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화성 용릉과 건릉(사적)
  -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(안녕동)
- (3) 신청내용
  - 위치 :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-794, 788번지  
(문화재구역에서 210m 이격)
    - 허용기준 1구역(개별심의)
  - 사업내용 : 단독주택 신축
    - 대지면적 : 753m<sup>2</sup>
    - 건축(연)면적 : 155.07m<sup>2</sup>(155.07m<sup>2</sup>)
    - 최고높이 : 4.3m
    - 건폐율 : 20.59%
    - 건축규모 : 지상 1층
    - 도로면적 : 530m<sup>2</sup>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## 7.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

### 가. 제안사항

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「화성 용릉과 건릉」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화성 용릉과 건릉(사적)
  -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(안녕동)
- (3) 신청내용
  - 위치 :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-793번지  
(문화재구역에서 230m 이격)
    - 허용기준 1구역(개별심의)
  - 사업내용 : 단독주택 신축
    - 대지면적 : 726㎡
    - 건축(연)면적 : 158.91㎡(158.91㎡)
    - 최고높이 : 4.3m
    - 건폐율 : 21.89%
    - 건축규모 : 지상 1층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## 8.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태양광 설치

### 가. 제안사항

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「화성 용릉과 건릉」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화성 용릉과 건릉(사적)
  -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(안녕동)
- (3) 신청내용
  - 위치 :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-714번지  
(문화재구역에서 353m 이격)
    - 허용기준 5구역(평지붕 14m 이하/경사지붕 18m 이하)
  - 사업내용 : 태양광 설치
    - 최고높이 : 15.80m
    - 모듈 : 600W×51EA
    - 전체부피 : 417.58m<sup>3</sup>
    - 수평투영면적 : 138.16m<sup>2</sup>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## 9. (사적)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### 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사적 「서울 태릉과 강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서울 태릉과 강릉(사적)
 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(공릉동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 - 주요내용
    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    - 조정사항
      - \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      - \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      - \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  -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0-138호, 2010.12.31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 보존구역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
공통사항	○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○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색상-회색, 밤색 등) ○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소재, 유광 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○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(재개발)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	

○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 개별검토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</li> <li>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</li> <li>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색상-회색, 밤색 등)</li> <li>○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광 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</li> </ul>	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

## 10. (사적)서울 정릉 및 서울 의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### 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「서울 정릉」 및 「서울 의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서울 정릉 및 서울 의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○○○

(2) 대상문화재명 : 서울 정릉(사적) / 서울 의릉(사적)

○ 소재지

- 서울 정릉 :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16(정릉동)
- 서울 의릉 :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-20(석관동)

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○ 주요내용

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- 조정사항

\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
\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
\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
○ 현행(서울 정릉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 보존구역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
3구역	○ 심의구역	
4구역	○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</li> <li>○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색상-회색, 밤색 등)</li> <li>○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광 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</li> <li>○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(재개발)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</li> </ul>	

○ 조정안(서울 정릉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 개별검토(보존구역)	
2구역	○ 최고높이 14m이하	○ 최고높이 17m이하
3구역	○ 개별검토	
4구역	○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</li> <li>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</li> <li>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색상-회색, 밤색 등)</li> <li>○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광 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</li> <li>○ 아파트 신축 재건축(재개발)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</li> </ul>	

○ 현행(서울 의릉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 개별심의	
2구역	○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(높이:면적)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</li> <li>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</li> <li>○ 경사 지붕은 경사비율의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1/8 이하인 경우에 한함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관련시설(축사, 가축시설, 도축장), 장사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산업단지, 물류시설, 물류터미널 등과 같이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</li> <li>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</li> <li>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</li> <li>○ 시설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(예: 지붕색상-회색, 밤색 등)</li> <li>○ 외벽재료는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광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</li> <li>○ 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(입회조사·표본조사·시굴조사·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)를 실시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,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</li> </ul> </li> </ul>	

○ 조정안(서울 의릉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 개별검토	
2구역	○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</li> <li>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(예 : 지붕색상-회색, 밤색 등)</li> <li>○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광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</li> </ul>	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



## 11. (사적)서울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### 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사적 「서울 연산군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서울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서울 연산군묘(사적)
 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7길 46(방학동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 - 주요내용
    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    - 조정사항
      - \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      - \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      - \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  - 현행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 보존구역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
4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
5구역	○ 심의구역	
공통사항	○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○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색상-회색, 밤색 등) ○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소재, 유광 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○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(재개발)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	

○ 조 정 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 개별검토(보존구역)	
2구역	○ 최고높이 5m이하	○ 최고높이 7.5m이하
3구역	○ 최고높이 8m이하	○ 최고높이 11m이하
4구역	○ 최고높이 11m이하	○ 최고높이 14m이하
5구역	○ 개별검토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</li> <li>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</li> <li>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색상-회색, 밤색 등)</li> <li>○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광 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</li> </ul>	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

## 12. (사적)서울 영취원과 송인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### 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사적 「서울 영취원과 송인원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(사적)
 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90(청량리동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 - 주요내용
    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    - 조정사항
      - \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      - \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      - \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
○ 현행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 개별심의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20m이하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(높이:면적)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</li> <li>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</li> <li>○ 경사 지붕은 경사비율의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1/8 이하인 경우에 한함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관련시설(축사, 가축시설, 도축장), 장사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산업단지, 물류시설, 물류터미널 등과 같이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</li> <li>○ 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(입회조사·표본조사·시굴조사·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)를 실시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,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</li> </ul> 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</li> <li>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</li> <li>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</li> <li>○ 시설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(예: 지붕색상-회색, 밤색 등)</li> <li>○ 외벽재료는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광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</li> </ul>	

○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
1구역	○ 개별검토	
2구역	○ 최고높이 14m이하	○ 최고높이 17m이하
3구역	○ 최고높이 17m이하	○ 최고높이 20m이하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</li> <li>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</li> <li>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(예 : 지붕색상-회색, 밤색 등)</li> <li>○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광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</li> <li>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</li> </ul>	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

### 13. 종묘 촬영허가신청(tvN 사극 ‘원경’)

#### 가. 제안사항

tvN 사극 ‘원경’ 종묘 촬영 신청 1건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촬영 신청 검토 결과 촬영콘티 및 극 설정상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지 등에 관한 심의 필요
- 「공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」 제2조 제2항 제1호 (공능유적기관의 장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)

#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종묘(사적)
  -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
- (3) 신청내용
  - 위치 : 종묘 영녕전
  - 사업내용
    - 촬영명 : tvN 사극 ‘원경’ 촬영
    - 촬영내용 : 종묘에 알현하는 방원과 종친들, 세자 양녕 촬영(1405년 10월)
    - \* 대사 없음
    - 반입장비 : 장비탑차 2.5톤 1대, 카메라탑차 1톤 1대, 촬영카메라 2대, 조명 4대, 음향장비 등
    - 일정 및 세부 내역

일자	시간	내용	촬영인원
2024. 1. 30.(화)	09:00-10:00	이동 및 준비	99명(출연자 30명, 스태프 등 69명)
	10:00-11:00	촬영	
	11:00-12:00	정리 및 철수	

- (4) 신청인 의견 : 태종과 종친들, 세자가 종묘에서 알현하는 내용을 실제 종묘 영녕전에서 촬영하여 드라마의 품격을 높이고자 함

---

# 보고사항

---

【 보고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2-14

1. 광화문 월대 관리 기반시설 구축 및 현판 경관 조명 개선 보고

가. 보고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「경복궁」 광화문 월대 관리를 위해 사전에 기반시설 구축 및 현판 경관 조명 개선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후 안전사고 및 관리의 필요성이 발생하여, 기반 시설을 구축하였으며, 현판 경관 조명의 개선 등에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개선 등의 조치 후 보고하는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경복궁 (사적)
  - 소재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
- (3) 보고내용
  - 위치: 광화문 주변
  - 사업내용
    - 광화문 월대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구축 완료

구분	세부내용
초소제작 설치	- 규격(6000×3100×3050) 1개소 설치
월대용 CCTV 설치	- 회전형 cctv: 2대, 고정형 cctv: 2대 - 서버, 광분배함 등 설치
월대용 방송장비 설치	- 옥외스피커 및 방송 AMP EM 등 설치

- 광화문 현판 경관조명 개선

구분	세부내용
LED 라인조명 설치	- LED 70W 4.2m를 철물 구조에 설치 운영 (W850×L4200)

- (4) 신청인의견(공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)
  -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의 상징성,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관리 기반 시설 구축 및 경관 조명 개선을 통하여 문화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2. 조선왕릉동부지구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

### 가. 제안사항

조선왕릉동부지구 내 사적 「구리 동구릉」, 「남양주 홍릉과 유릉」, 「남양주 광릉」 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을 보고합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공중이용시설(주차장)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시행하고자 함

**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】**

**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**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
**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**

**제18조의7(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)**

-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 됨에 따라 해당 차량 이용 관람객 편의 증진

### 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: ○○○

(2) 대상문화재명

- 구리 동구릉(사적),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
- 남양주 홍릉과 유릉(사적),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-1
- 남양주 광릉(사적),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4

(3) 신청내용

대상문화재	위치	사업내용
구리 동구릉	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-22 외 1필지 (문화재구역)	○ 주차장 북쪽 충전기 3기(1기당 2면 수용 가능) 설치 * 굴착, 캐노피 설치 포함
남양주 홍릉과 유릉	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37-2 외 1필지 (문화재구역)	○ 주차장 북쪽 충전기 2기(1기당 2면 수용 가능) 설치 * 굴착, 캐노피 설치 포함
남양주 광릉	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8-1 (문화재구역)	○ 주차장 남쪽 충전기 2기(1기당 2면 수용 가능) 설치 * 굴착, 캐노피 설치 포함



(4) 신청인 의견(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)

-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선왕릉동부지구 내 주차장에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필요
- 강우 시 충전기 사용에 따른 감전주의와 배터리 옆 폭주 충전으로 전기차 화재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내문 설치 및 지자체 등록을 할 예정임
- 주차장 권역 내이며, 문화재 경관저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됨

### 3.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

#### 가. 보고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남양주 사릉」 주변 창고시설 부지 진출입로 개설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#### 나. 보고내용

문화재	소재지	신청인	사 업 내 용	처리결과	처리일자
(사적) 남양주 사릉	경기도 남양주시	○○○	<창고시설 부지 진출입로 개설> ○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65-33 외 1필지 (2구역/문화재구역과 16m 이격) ○ 사업내용 : 창고시설 부지 진출입로 개설 - 대지면적 : 2,897㎡ - 신청면적 : 102㎡ - 도로 폭 7.7~16.8m, 길이 12m - 아스콘 포장(t:75cm) 102㎡, 도로경계석 (150*150*1000mm) 28m, 흙관(D:400mm) 11.4m	허가	'23.11.29.
(사적) 양주 은릉	경기도 양주시	○○○	<농업용창고 조성> ○ 위치 :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 103-51번지 (1구역/문화재구역과 12m 이격) ○ 사업내용 : 농업용창고 조성 - 대지면적: 2,043㎡ - 건축면적(연면적): 149㎡(149㎡) - 건물높이: 5.5m(경사지붕) - 건축규모: 지상1층, 1동, 경량철골조 - 절토량: 324.5㎡ ※ 2021.10.15.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되어 재신청된 사항임	허가	'23.11.29.
(사적) 화성 용릉과 건릉	경기도 화성시	○○○	<주유소 내 자동세차장 증축(허가변경)> ○ 위치 :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46 (4구역/문화재구역과 200m 이격) ○ 사업내용 - 건축(연)면적 : 58.73㎡ → 70.45㎡ - 최고높이 : 4.1m → 4.45m - 자동세차장 위치 변경으로 인한 면적 및 높이 증가	허가	'23.12.4.

문화재	소재지	신청인	사업내용	처리결과	처리일자
(사적) 파주 장릉	경기도 파주시	○○○	<p>&lt;기존사면 성토 및 구조물 설치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치 :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498-2 번지 외 1필지 (3구역/문화재구역과 80m 이격)</li> <li>○ 사업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지면적 : 2,459㎡</li> <li>- 총성토량 : 2,147.04㎥</li> <li>- L형옹벽(H:1.0~4.7m) : 95m 설치</li> </ul> </li> </ul>	허가	'23.12.11.